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시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⑥ ‘갑’ (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입소 · 이용료 납부 】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당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전월 25일 납부하기로 한다.(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농협 351-0020-1249-23 예금주 용인효사랑 계좌이체로 한다.
-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등급비용
요양급여	1등급	84,240원
	2등급	78,150원
	3~5등급	73,800원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2인실)	5,000원
	식재료비(1식)(간식비 포함)	3,0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세부내역(30일 기준)

등 급	본인부담금(일반 20%)	비급여 식재료비(간식비포함)	총 계
1	505,440원	270,000원	775,440원
2	468,900원	270,000원	738,900원
3~5	442,800원	270,000원	712,800원

- 단, 본인부담금은 의료감경 대상자의 경우 12%, 8% 각각 부담, 기초생활수급 자는 비용 발생 안됨.

【 계약자·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

1. 입소자(갑)의 권리

-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라.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마.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아.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자.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차.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카.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 가.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협조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나. 입소자 ‘갑’의 신병 이상 시 보호자 ‘병’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의무
- 라.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 마.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3. 입소자(갑)의 의무

-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의무
-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마. 기타 시설 생활규칙 이행 의무

4. 신원인수인(병)의 권리 및 의무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라. 입소자에 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 의무

마.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바.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1) ‘갑’의 성명을 변경하거나 또는 ‘갑’의 보호자의 주소, 성명을 변경할 경우
사.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의무

(1) ‘갑’ 또는 ‘갑’의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2) ‘갑’의 보호자가 강제집행, 가차압, 가처분, 파산신청, 파산선고, 경매신청을 받았거나 화해 신청을 하여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3)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아.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자.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차. 계약의 해지 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퇴소 】

-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 입소물품 및 의복 착용 】

- ①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 ② ‘갑’은 개인 옷을 착용한다(단, 피부질환, 외상 등의 특별한 사유 시 단체복을 착용할 수 있다)

【 면회 및 외출·외박 】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시설관리 】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 건강관리 】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물 배상 】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 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 **식사 및 간식** 】

- ① ‘을’ 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 에게 제공하며, ‘갑’ 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 이 별도 부담한다.
- ② ‘을’ 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 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 **요양실의 배정** 】 ‘갑’ 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 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 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 이 조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의무** 】

- ① ‘을’ 은 ‘갑’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 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 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 ④ ‘갑’ 은 ‘을’ 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을’ 은 ‘갑’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배상책임**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 은 ‘갑’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 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